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 과세면제조례폐지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케 되므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

4. 주요골자

- 철도용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 후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므로 본조례폐지

5. 검토의견

- 철도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철도부지로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 권보호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 부지로 편입된 토지를 확정분할 경우의 토지소유자가 동기하는 분할등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 이러한 등록세면제에 관한 규정을 92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반영케 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